

P&B Report

법제사법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66건
정무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외 147건
기획재정위원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77건
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2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양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0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사회형성법안 외 57건
보건복지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7건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0건
여성가족위원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주요 구성



상정 법률안 목록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 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별첨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I. 소위원회

08	1) 상정 법률안 목록
10	2) 주요 법률안 소개
10	정무위원회
11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대표발의)
13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4	3) 보험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18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19	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1	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
22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
24	8) 청년기본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4	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5	교육위원회
26	1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7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9	행정안전위원회
29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31	3) 법률안 비교·분석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II. 상임위원회

36	1) 상정 법률안 목록
42	2) 주요 법률안 소개
42	정무위원회
42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
43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45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47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대표발의)
48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49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51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52	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53	8)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53	9) 수소사회형성법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p>55 1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대표발의)</p> <p>56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p> <p>57 12) 이라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라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p> <p>58 1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대표발의)</p> <p>59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p> <p>60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p> <p>61 1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p> <p>62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63 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65 1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66 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대표발의)</p> <p>67 3) 법률안 비교·분석</p> <p>67 수소사회형성법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p> <p>III. 국회본회의</p> <p>72 1) 통과 법률안 목록</p> <p>76 2) 주요 법률안 소개</p> <p>76 정무위원회</p> <p>76 1)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p> <p>78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p> <p>80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p> <p>82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p> <p>84 문화체육관광위원회</p> <p>84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87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p> <p>89 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p> <p>92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94 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p> <p>9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p> <p>96 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p> <p>98 1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p> <p>100 보건복지위원회</p> <p>100 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p> <p>102 1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p> <p>104 환경노동위원회</p> <p>104 1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106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108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110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112 1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114 1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Contents

국토교통위원회

- 116 2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118 2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0 2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4 2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법률안 비교·분석

- 1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130 별첨. 1. 10월 소위원회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132 2. 용어해설
135 3. 10월 국회 일정표

SAMPLE

R&B Report

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3. 법률안 비교 · 분석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 대외부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9.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10. 금융소비자보호법안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청년기본법안
		32. 청년발전기본법안
		33.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34. 청년발전지원법안
		35.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36. 청년정책기본법안
		3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9.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증소벤처 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

의안번호 2006989
제안자 정부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7.05.23. 제안
 2017.05.24. 상임위 회부
 2017.09.18.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소위원회

2017.11.30. 상정/축조심사
 2017.12.06. 상정
 2017.12.21. 상정
 2018.11.23. 상정/축조심사
 2019.03.18. 상정/제안설명/
 축조심사
 2019.08.14. 상정/제안설명/
 축조심사
 2019.10.24. 상정/제안설명/
 축조심사

제안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등 업종 구분(안 제3조 및 제4조)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

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안 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지침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안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

라.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마.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등(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소비자가 일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

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아.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안 제51조 및 제52조)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

용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자. 과징금 제도의 도입(안 제62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관계기관 의견

국회사무처

제정안들은 이러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중지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는 점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찬성함.

주요발언

최운열 위원(더불어민주당)



나머지는 정리가 잘돼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돼서는 지금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 피해 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제계하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는 게 아니라 과태료 형태로 실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하면 자율화하고 최대한도 자율을 주되, 거기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게 도입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 것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싶고요.

이학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근의 DLF 사태를 보더라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항이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태료, 징벌적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 보상금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봐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손해배상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집단소송제도 오래 전부터 소비자단체들이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한 한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또 입증책임도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사실은 소비자들이 피해 원인을 규명해서 자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피해를 일으킨 쪽이 자기들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그런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진태 위원(자유한국당)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하면 본능적으로 이게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법체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만·행사가 아주 구별이 돼 있고 엄격한 손해를 입은 범위 내에서만 하게 민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이렇게 예외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어떤 분야에서는 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요새 DLF 사태, DLF 사태 많이 하니까 이런 법 좀 확 도입해 가지고 속 시원

하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법체계는 자꾸자꾸 고여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법체계라고만 하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세부적인 문제 간략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징벌적손해배상은 아까 법체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해외사례도 물어보셨고 하는데,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영미법적 발상입니다. 대륙법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에 대해서 동일행위가 자꾸 반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징벌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국가 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도 하도급법·기간제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대리점법·제조물책임법·가맹사업거래법에 징벌적손해배상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5272
 제안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민병두·고용진·김상희·김영주·박용진·박정·박주민·안규백·이종걸·제윤경 의원 (10인)
 김관영 의원 (1인)
 이찬열 (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7.01.25. 제안
 2017.01.26. 상임위 회부
 2017.09.18.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소위원회

2017.11.30. 상정
 2017.12.06. 상정
 2017.12.21. 상정
 2018.11.23. 상정/축조심사
 2019.03.18. 상정/제안설명/
 축조심사
 2019.08.14. 상정/제안설명
 2019.10.24. 상정/제안설명/
 축조심사

제안이유

보험 가입에 있어 일부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보험계약자 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용인해서는 안됨.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 이 연령·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 101조의2 신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한편,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등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

주요내용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보험회사 등의 행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01조의3 신설).

관계기관 의견

금융위원회

1. 금융계약 시 소비자 차별금지 의무 부과

차별금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차별금지와 관련된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권유행 위 및 정상적인 신용평가 등의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부동의.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규정은 과도한 이중규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최근 「보험업 법」 등 개정을 통해 과태료·과징금을 상향조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인 상황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원 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적다는 입장이므로 부동의.

국회사무처

1. 금융계약 시 소비자 차별금지 의무 부과

「보험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행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가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차별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찬성함.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정안에서 유형화한 보험계약 체결·모집 단계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보험소비자가 관련 사실 및 증거 를 쉽게 보유할 수 있고 경제적 유인 제거로 법위반행위가 감소할 수 있으며, 현행 금융감독구조가 건전성 감독과의 상 충으로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고, 금융당국이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도 타업권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효율적이고 유효한 일 종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억지수단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함.

주요발언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않음.

정무위원회

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0628

제안자 자유한국당

김종석·경대수·김석기·김선동·김용태·김진태·김학용·박맹우·박성중·정태옥·추경호 의원(1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9.05.24. 제안
 2019.05.27. 상임위 회부
 2019.08.22.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소위원회

2019.10.24. 상정/제안설명/
 축조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준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관계기관 의견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요건이 현실적으로 다양한 ICT 기업의 진입과 은행의 경영안전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하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요건의 변경은 타 업권과의 균형, 은행의 간전경영 확립 필요성, 특례법 제정 시의 국회 논의 경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

국회사무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유도함으로써 금융혁신을 활성화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요건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요건에서 제외하여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창출 플랫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24시간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SNS 간편 송금, 상담챗봇 등) 및 상품(간편한 개설이 가능한 공동계좌 출시, 상품의 만기·적립방식 다양화 등)의 선도적 도입 등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주요발언

김종석 위원(자유한국당)


 지금 K뱅크가 사실상 대출 중단 사태이고 이 상태로 가면 BIS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사실상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이것은 이 법의 입법 취지와 크게 어긋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입법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려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인터넷은행법이 아니라 은행법상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 회사고 은행만 하겠다고, 금융업만 하겠다고 들어 오신 분들인데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개 ICT, 여러 가지 비즈니스 라인들을 가지고 계신 ICT 기업이 대부분 또 플랫폼 비즈니스인데다가 네트워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레 산업 특성상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많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번 제도 시행이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요건 완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견해들이 상당히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발언

장병완 위원(무소속)



경제 관련 여러 가지 규제법령은 각 법의 고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관련 여러 가지 법을 다니열해 갖고 저 것 한다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기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법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타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사실 경제 관련 문제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학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처음부터 이런 일이 오리라고 예견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은행을 1기에 2개 은행을 했는데 사실 이 법에 의하면 KT은행은 통과 못한다고 세상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면 사실은 그때 KT은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풀어주는 거라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권을 은행에 하나 주는 건데 ICT

기업을 경영권자가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은행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풀어주는 거라고 해도 우리가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법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풀어줄 때 이후에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도 한번 예측해 봐야 되겠고요.

또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아직 우리가 충분히 논의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구 풀어주기만 하는 게 옳은지 하여튼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왕 이렇게 법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한번 재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위원(자유한국당)



여당 위원님들이 그것 좀 많이 해 주자고 그렇게까지, 오히려 그때는 제가 좀 반대 취지의 입장을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어줘도 지금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지요? 두 군데지요? 그중의 하나가 방금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얘기하신 KT의 K뱅크인가 그것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마저도 공정거래법으로 이게 또 재

승인 날지 말지 지금 불투명하다 이렇다는 건데……

성일종 위원(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하면 기업을 하다가 보면 공정거래법, 특가법 그것 위반하는 게 쉽게 위반될 수 있어요. 경영자들, 임원들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금융업을 하면서 금융업법 중심으로 가줘야지 기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법들의 위반되는 사항들 때문에 다른 것까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현장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주로 겪어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법은 원래 개정안의 취지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하면 어느 기업도 이것 하기가 어려워요.

정무위원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5817	제안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권미혁·김삼화·김성수·서영교·송옥주·이철희·한정애 의원 (8인)
			자유한국당	김종석·나경원 의원 (2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1인)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8.10.01.	제안
	2018.10.02.	상임위 회부
	2018.12.2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소위원회	2019.03.18.	상정
	2019.10.24.	상정

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직위인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여성 이사의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및 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사의 여성 할당제를 법률로 도입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부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이사 진출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3 및 제165조의20 산설).

관계기관 의견

금융위원회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및 참여 제고 등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사회의 구성 등의 사항은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공시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녹색경영 정보 등의 사례와 같이 자율공시 및 인센티브 부여 방식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므로 반대함.

국회사무처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2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사회 임원 성별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하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① 여성임원 할당제를既도 입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할당제 도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이른바 유리천장(glass-ceiling)을 제거하고 경제분야에서의 성평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 ② 기업경영 관련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③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찬성함.

주요발언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않음.

정무위원회

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9288

제안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고용진·도종환·유동수·윤준호·이용득·이종걸·이학영·정재호·최운열 의원(10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제안
2019.03.18.	상임위 회부
2019.03.19.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2019.08.22.	

소위원회	상정/제안설명/ 축조심사
2019.10.24.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 나. 금융회사들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 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 라.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관계기관 의견

국회사무처

개정안은 이러한 FATF의 권고 및 외국의 규제동향 등에 맞추어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인 바, 익명성을 가진 전자적 교환매개수단의 거래 증가로 이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입법방향으로 생각되므로 찬성함.

주요발언

김종석 위원(자유한국당)

지금 이 법안이 FATF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FATF 가이드라인에 없는 조항도 김병욱 의원님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또는 6조(적용범위) 또는 7조 제6항 이런 것은 아마 금융위원회하고 김병욱 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FATF 가이드라인에 없는 데 들어간 이유가 궁금한데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FATF 가이드라인에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ISMS의 무를 준수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실명확인계좌 확인하라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치프리미엄 가상통화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열풍이 있었을 때 그 열풍을 짐작우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실명으로 확인하고 거래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에 나와 있는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을 어떻게 짐작웠는가 궁금

해 하는, 또 모범적인 사례로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한 것들을 암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FATF에 없는 것들도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더불어민주당)

이 법은 가상자산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법이 아니고요 자금세탁 방지와 그다음에 테러자금 조달의, 이런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6621

제안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강창일·권미혁·김민기·김병관·김한정·민병두·소병훈·송갑석·우원식·윤관석·이인영·이재정·홍익표 의원(14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8.11.15. 제안

2018.11.16. 상임위 회부

소위원회

2019.04.01. 상정

2019.09.27. 상정

2019.10.01. 상정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벌자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현행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각계로부터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수벌자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안 제2조제1호, 제15조, 제17조 개정, 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8조의2 신설).
- 나.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 과징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6 신설).
-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한편,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4까지, 제63조).
-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국외 재이전, 국내대리인, 손해배상 보험 등 현행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로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제30조 개정 및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6까지 신설).

관계기관 의견

의견 없음.

주요발언

권은희 위원(바른미래당)



지난번 심사 이후로 행안부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과 개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고 그 부분이 GDPR이 요구하는 독립성과 관련된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사·처분권은 그 기준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위배된 행위가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분하는 권한이므로 이 부분의 집행 기능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4차산업특위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병관 위원(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지금 현행법이 되어 있는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라는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길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검찰의 시각에서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조항을 가지고 형사 처벌한 사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 조항을 가지고 기소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검찰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암호화 같은 것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128비트 암호화 이상을 해야만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데 기업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의 암호화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은 모두 다 고객이 맡긴 자산 예를 들어서 현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하는데 만약에 현금이 은행 강도나 이런 걸 통해서 탈취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은행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현금 보호 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협조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데 지금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고 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면하는 게 맞다. 다만 이것에 대한 인전 조치의 보호 책임은 결국 법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지도록 하는 게 맞고 그 부분은 지금 EU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과징금의 형태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과태료나 다른 부

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지우는 부분은 저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지금 김병관 위원 문제 제가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해킹 등에 의해서,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별 치 조항? 이 안전성 조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이고, 고의나 과실이 아닌 해킹 등에 의한 정보 유출을 가지고 형사 처벌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관 위원(더불어민주당)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면 조사·처분 권한 또 고증처리·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이 보호위원회에 없게 됐을 경우에 적정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해한 걸로는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R&B Report

III. 국회본회의

- 1. 상정 법률안 목록
- 2. 주요 법률안 소개
- 3. 법률안 비교 · 분석

통과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지진·화재·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대중문화예술사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1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

의안번호 2016017
제안자 정부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8.10.19. 접수
 2018.10.22. 상임위 회부
 2018.12.2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대체토론/
 소위원회

소위원회

2019.03.18. 상정/제안설명/
 축조심사
 2019.08.14. 상정/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상임위원회

2019.08.22.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08.26. 회부
 2019.10.24.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19.10.31. 수정가결

제안이유

민간에서 산출되어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하여 규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 산출과 관련된 오류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를 정의하고, 중요지표 지정 및 해당 지표 산출기관의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중요지표 사용에 따른 의무를 규정하는 등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지표의 정의(안 제2조)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서의 지급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등을 결정할 때 쓰이는 준거로서 산출·공시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함.

나.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안 제4조 및 제5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의 규모나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관리 필요성이 큰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의무 및 산출업무 중단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i)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 제정·개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고, 중요지표 산출업무에 이용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출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도록 함.

ii) 갑작스러운 중요지표 산출업무 또는 중요지표와 관련된 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시 금융위원회가 산출업무 또는 제출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요지표 사용에 따른 의무(안 제9조)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중요지표의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금융 계약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비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마. 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안 제10조)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 제출업무 또는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행정처분 및 과징금 등의 대상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

금융거래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에 대한 주의·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의 제출업무 또는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주요발언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되었으나, 이의없음.

심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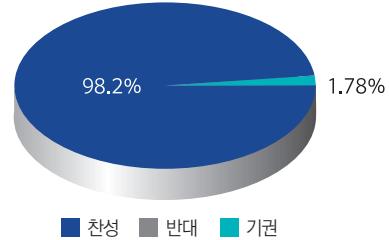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권을 신설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중요지표산출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 입증책임 전환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함.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자본시장법 등의 입법례와 같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권 명시하고 입증책임 전환이 EU 벤치마크법 등 외국 입법례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점, 전문투자자인 이용자에게까지 입증책임 전환을 인정할 필요성은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권을 신설하고, 기초자료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7조 등).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18. 10. 19 / 2019. 10. 31
- 발의자 / 제안자 : 정부
- 표결의원 : 재석 229인 / 제적 296인
- 표결결과 : 원안가결 229인(찬성 225인, 반대 0인, 기권 4인)



찬성
225인

더불어민주당 (107인)

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
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준·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진표·김철민·김태년·
김한정·김해영·남인순·노웅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운·박범계·박병석·박완주·
박용진·박재호·박정·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현수·설훈·송갑석·
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안규백·안민석·여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
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
이상헌·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
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정성호·정세균·정재호·정준숙·정은혜·제윤경·조승래·
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의표·황희 의원

자유한국당 (81인)

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김기선·김도읍·김상훈·김선동·김성원·金成泰·
김세연·김승희·김영우·김재경·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
민경욱·박대출·박명재·박완수·박인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송희·신보라·심재철·안상수·
엄용수·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욱·윤종필·윤한홍·
이만희·이명수·이은권·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학재·이현승·
이현재·임이자·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점식·조경태·
조훈현·주광덕·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일표·홍철호 의원

바른미래당 (20인)

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종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승민·유의동·
이동섭·이태규·임재훈·장정숙·정병국·정운천·채이배·최도자 의원

정의당 (5인)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 의원

민주평화당 (3인)

김광수·조배숙·황주홍 의원

무소속 (9인)

이용호·정인화·김경진·김종희·최경환·장병완·천정배·문희상·손혜원 의원

없음

반대
0인

기권
4인

자유한국당 (2인)

박성중·이은재 의원

바른미래당 (2인)

이상돈·하태경 의원

정무위원회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023244
제안자 정무위원장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19.08.22. 상정/처리
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08.26. 회부
2019.10.24.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19.10.31. 원안가결

제안이유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로서, 우리나라의 P2P대출시장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현재 P2P대출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제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규제의 강제성 부족,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바, P2P대출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혁신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 이용자가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 대출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0조).
- 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자금 대출은 모집금액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함(안 제12조).
-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과잉·축소·허위·비방 광고, 원금보장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19조).
- 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대출금액, 대출금리, 수수료, 연계투자의 위험성 및 수익률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여야 함(안 제22조).
- 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등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분리보관하여야 함(안 제26조).
- 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함(안 제28조).
- 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안 제31조).
- 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투자자별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32조).
- 타. 여신금융기관들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근거, 업무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협회 가입의무 등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하. 한도초과 대출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대안반영폐기 법률안(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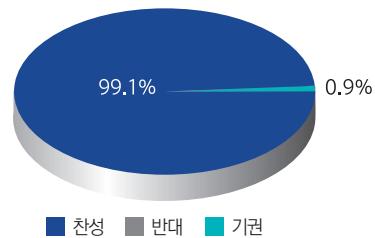
- [2008120] 온라인대출증개업에 관한 법률안(민병우의원 등 11인발의)
- [201178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발의)
- [20151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발의)
- [201305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진복의원 등 10인발의)
- [2012093]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발의)

주요발언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되었으나, 이의없음.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19. 10. 30 / 2019. 10. 31
- 발의자 / 제안자 : 정부
- 표결의원 : 총 229인 / 제적 296인
- 표결결과 : 원안가결 229인(찬성 227인, 반대 0인, 기권 2인)



찬성
227인

더불어민주당 (107인)

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
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준·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진표·김철민·김태년·
김한정·김해영·남인순·노웅래·맹성규·민병우·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완주·
박용진·박재호·박정·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송갑석·
송영길·송옥주·신동근·신창현·심재권·안구백·안민석·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
원혜영·위성곤·유동수·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현·
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후삼·이훈·인자근·
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정성호·정세균·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진영·정은혜·
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의표·황희·의원

자유한국당 (84인)

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김가선·김도읍·김무성·김상훈·김선동·김성원·
金成泰·김세연·김승희·김영우·김재경·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
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명재·박성중·박완수·박인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송희경·
신보라·심재철·안상수·엄용·염동열·윤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
윤재욱·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은권·이은재·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
이채익·이철규·이학재·이현승·이현재·임이자·장재원·정갑윤·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점식·
정종섭·정진석·조경태·조훈현·주광덕·최교일·최연혜·주경호·한선교·함진규·홍일표·홍철호 의원

바른미래당 (20인)

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동섭·
이상돈·이태규·이혜훈·장정숙·정병국·채이배·최도자 의원

정의당 (4인)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 의원

민주평화당 (3인)

김광수·조배숙·황주홍 의원

무소속 (9인)

김경진·김종회·문화상·손혜원·이용호·장병완·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반대
0인

없음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인) 신경민 의원

바른미래당 (1인) 김성식 의원

정무위원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의안번호 2013919
제안자 정부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8.06.15. 제안
 2018.07.17. 상임위 회부
 2018.11.22.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소위원회

2018.11.23. 상정/축조심사
 2019.03.18. 상정
 2019.08.14. 상정/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상임위원회

2019.08.22.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08.26. 회부
 2019.10.24.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원안가결)

본회의

2019.10.31. 원안가결

제안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국내에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변경등록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를 정하고,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발언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되었으나, 이의없음.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18. 06. 15 / 2019. 10. 31
- 발의자 / 제안자 : 정부
- 표결의원 : 자석 228인 / 제적 296인
- 표결결과 : 원안가결 228인(찬성 225인, 반대 0인, 기권 3인)



찬성
225인

더불어민주당 (103인)

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
 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준·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진표·김철민·김태년·
 김한정·김해영·남인순·노웅래·맹성규·민병우·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완주·
 박용진·박재호·박정·박찬대·박홍근·백혜련·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송갑석·송옥주·
 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안규백·안민석·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
 위성곤·유동수·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상현·아석현·이용득·이원욱·
 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전자수·
 전해철·전현희·정성호·정세균·정재호·정준숙·제윤경·조승래·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
 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자유한국당 (83인)

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김기선·김도읍·김무성·김상훈·김선동·김성원·
 金成泰·김세연·김승희·김영우·김재경·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나경원·문진국·
 민경우·박대출·박덕흠·박명재·박성중·박완수·박인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
 심재철·안상수·엄용수·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우·
 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은권·이은재·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
 이철규·이학재·이현승·이현재·임이자·장제원·전희경·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종섭·정진석·
 정점식·조경태·조훈현·주광덕·최교일·최연해·추경호·한선교·힘진규·홍일표·홍철호 의원

바른미래당 (22인)

권은희·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중로·박선숙·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승민·유의동·

이동섭·이상돈·이태규·이혜훈·장정숙·정병국·정운천·채이배·최도자·하태경 의원

정의당 (5인) 심상정·윤소하·김종대·이정미·여영국 의원

민주평화당 (3인) 김광수·조배숙·황주홍 의원

무소속 (9인) 김경진·김종희·문희상·손혜원·이용호·장병완·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반대

없음

0인

기권

더불어민주당 (2인) 고용진·정갑윤 의원

3인

자유한국당 (1인) 이철규 의원

SA
MPLE

정무위원회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5158

제안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강병원·강훈식·고용진·권칠승·김경협·김병관·김해영·박찬대·안호영·오영훈·윤후덕·이상현·이종걸·정재호 의원 (15인)
이찬열 의원 (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8.08.30. 제안
 2018.08.31. 상임위 회부
 2018.11.22.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소위원회

2019.03.25. 상정/제안설명/
 촉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상임위원회

2019.08.22.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08.26. 회부
 2019.10.22.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원안가결)

본회의

2019.10.31. 원안가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동시에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공급원기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가 지연되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비용분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상승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일자 : 2018. 08. 30 / 2019. 10. 31
- 발의자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6인
- 표결의원 : 총 233인 / 제적 296인
- 표결결과 : 원안가결 233인(찬성 229인, 반대 0인, 기권 4인)



주요발언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자유한국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정무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구체사유 여부와 관계 없이 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럴 때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정 신청을 왜 합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구제방법은 있는데 결과물은 없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왜 도입하느냐고요.'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우



지금 개정안에 있어서는 책임 여부를 사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또는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관리비 등 간접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없는 상태로 여기에서 비용이 증가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새로운 증액을 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 단계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있고요, 원사업자가 있고 수급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책임하고는 무관하게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증액을 해 주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번 얘기는 해 볼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의 핵심은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 변동'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걸로, 기준에 있던 사유 중에 그걸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찬성
229인

더불어민주당 (106인)

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
김병욱·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
김한정·김해영·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완주·
박용진·박재호·박정·박찬대·박홍근·백자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
송갑석·송기현·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안규백·안민석·어기구·오영훈·
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후덕·이개호·이규희·
이상민·이상현·이석현·이원욱·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
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은혜·정재호·정충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
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자유한국당 (83인)

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김광림·김기선·김도읍·김무성·김상훈·김선동·
김성원·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
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명재·박순자·박완수·박인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
송희경·신보라·심재철·인상수·엄용수·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현·윤영석·
윤재우·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은재·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
이철규·이학재·이현승·임이자·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종섭·정진석·
정점식·조경태·조훈현·주광덕·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일표·홍철호 의원

바른미래당 (22인)

김동철·이상돈·이혜훈·지상욱·채이배·유승민·김성식·김종로·정운천·최도자·권은희·김관영·
김삼화·박선숙·박주선·이동섭·이태규·장정숙·유의동·신용현·오신환·임재훈 의원

정의당 (3인)

김종대·이정미·여영국 의원

민주평화당 (2인)

김광수·조배숙 의원

무소속 (13인)

강길부·김경진·김종희·문희상·손혜원·윤영일·이언주·이용호·이정현·
장병완·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반대
0인

자유한국당 (2인)

윤종필·이현재 의원

바른미래당 (1인)

정병국 의원

우리공화당 (1인)

홍문종 의원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023205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19.07.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07.18. 회부
2019.10.24.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19.10.31.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을 통해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2조의6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개정).

나.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이용하기 힘든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 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할 뿐 아니라 임원 등이 배임죄 등 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반영폐기 법률안(2건)

- [201614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의원 등 13인발의)
- [201795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3인발의)

주요발언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되었으나, 이의없음.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일자: 2019. 10. 29 / 2019. 10. 31
- 발의자 /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표결의원: 총석 180인 / 제적 296인
- 표결결과: 원안가결 180인(찬성 176인, 반대 2인, 기권 2인)



찬성

176인

더불어민주당 (92인)

강병원·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
김상희·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한정·김해영·남인순·
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범계·박병석·박원주·박재호·박정·박찬대·
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송갑석·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
심재권·안민석·안호영·오영훈·오제세·우상호·위성곤·유동수·유승희·윤관석·윤일규·윤준호·
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현·이석현·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준석·이학영·이후삼·
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정성호·정세균·정은혜·정재호·정준숙·제윤경·
조승래·조승천·진선미·최운열·최인호·표창원·홍의표·황희 의원

자유한국당 (60인)

강석진·경대수·곽상도·김기선·김도읍·김무성·김상훈·金成泰·김세연·김승희·김영우·김재경·
김종석·김한표·김현아·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완수·박인숙·송석준·송언석·신보라·

심재철·안상수·엄용수·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윤상직·윤영석·윤재옥·이만희·이명수·
이양수·이은권·이종구·이종명·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현승·임이자·장제원·정갑윤·
정우택·정유섭·정점식·정종섭·조경태·주광덕·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일표 의원

바른미래당 (13인)

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박선숙·신용현·오신환·유승민·이동섭·이상돈·장정숙·채이배·
최도자 의원

정의당 (2인) 김종대·윤소하 의원

민주평화당 (2인) 김광수·황주홍 의원

무소속 (7인) 강길부·문희상·손혜원·유성엽·장병완·천정배·최경환 의원

반대

2인

자유한국당 (2인) 강효상·곽대훈 의원

기권

2인

자유한국당 (2인) 윤종필·이현재 의원

국회본회의

야당의견

법률대비

국토교통위원회

2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3900

제안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김현아·경대수·문진국·박덕흠·박인숙·이종구·이종명·이철규·추경호·황영철 (10인)
송기현 의원 (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18.06.07. 제안
 2019.03.28.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소위원회

2019.07.17. 상정/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상임위원회

2019.08.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19.08.20. 회부
 2019.10.24.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19.10.31. 수정가결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요구하고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하다하여 대금이 미지급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기입할 수 있게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료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관련 분쟁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및 제99조제3호의2).

주요발언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되었으나, 이의없음.

심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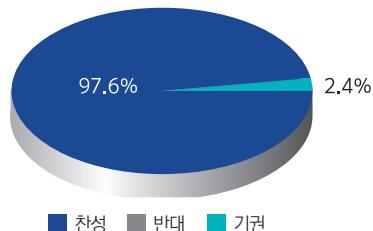
민간공사 발주자의 유형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공사 규모 및 형태도 다양하여 모든 민간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 영세사업자 등 민간 발주자가 반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민간공사 발주자의 유형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공사 규모 및 형태도 다양하여 모든 민간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 영세사업자 등 민간 발주자가 반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수정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2항 및 제5항 신설).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18. 06. 07 / 2019. 10. 31
- 발의자 / 제안자 : 김현아의원 등 11인
- 표결의원 : 총 169인 / 제적 296인
- 표결결과 : 원안가결 169인(찬성 165인, 반대 0인, 기권 4인)



찬성
165인

더불어민주당 (84인)

강병원·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
 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진표·김철민·김태년·남인순·
 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홍철·박경미·박광운·박병석·박용진·박정·박홍근·백재현·백혜련·
 변재일·서형수·설훈·송갑석·송기현·송영길·송옥주·신동근·신창현·심재권·안규백·안민석·
 안호영·오영훈·오제세·우상호·위성곤·유동수·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후덕·이개호·이상민·

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 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현희·
정은혜·정성호·정세균·정춘숙·제윤경·조승래·진선미·최인호·최재성·표창원·홍익표·황 회 의원

자유한국당 (57인)

강석진·강효상·경대수·곽대훈·김기선·김명연·김무성·김성원·金成泰·김세연·김승희·김영우·
김재경·김정재·김종석·김한표·김현아·민경우·박대출·박덕흠·박인숙·백승주·송석준·송언식·
신보라·심재철·안상수·엄용수·염동열·유기준·유민봉·윤상직·윤영석·윤종필·윤한홍·이만희·
이명수·이은권·이종구·이종명·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현승·임이자·정갑윤·정용기·정우택·
정유섭·정점식·조경태·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 의원

바른미래당 (14인)

김동철·김성식·김수민·김중로·신용현·오신환·이동섭·이상돈·이태규·이혜훈·장정숙·주승용·
채이배·최도자 의원

정의당 (1인) 여영국 의원

민주평화당 (1인) 황주홍 의원

무소속 (8인) 강길부·김종회·문희상·박지원·이정현·장병완·정인화·천정배 의원

반대

0인

없음

기권

4인

자유한국당 (1인) 김도읍 의원

더불어민주당 (2인) 이상현·신경민 의원

무소속 (1인) 손혜원 의원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7, 8, 10-13, 15, 16층)

www.draju.com